

주주님 귀하

## 제2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1조에 의거 제2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소집일시 : 2021년 03월 31일(수요일) 오전09시 00분
2. 소집장소 : 경상북도 영천시 도남공단길 16(사무동 강당)
3. 보고사항
- 1). 영업보고    2). 감사보고

### 4.결의안건

제1호 의안 : 제29기(2020.01.01 ~ 2020.12.31)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제3호 의안 : 임원 인사관리규정 일부 변경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 4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직접행사: 주주총회참석장, 신분증

-간접행사: 주주총회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기재), 대리인신분증

2021년03월16일

**에스엠 화진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강 래 (직인생략)**

### 주주총회 참석장

※ 소유주식수	명부주주				
	실질주주	에스엠 화진(주) 제29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합니다.			
	주식수계	일시	2021/03/31(수)	장소	경북 영천시 도남공단길 16 사무동강당
	의결권수		09:00		
	주주명	에스엠 화진(주) 귀중			

정관 신규대조표

현 행	변 경
<p>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li> <li>2.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li> <li>3. 전자,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li> <li>4. 무역업</li> <li>5. 인터넷 서비스</li> <li>6. 섬유제품 제조 및 판매업</li> <li>7.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li> <li>8. 바이오산업 관련 기술 및 제품의 개발생산</li> <li>9. 나노 복합 소재 개발 생산</li> <li>10. IT부품 개발 생산</li> <li>11.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제조 및 판매업</li> <li>12. 신재생에너지 연구 개발사업</li> <li>13. 신재생에너지 관련 발전사업</li> <li>14. 신재생에너지용 자동차 부품 및 용품제조</li> <li>15. 신재생에너지용 자동차 부품 수입판매업</li> <li>16. 신재생에너지 관련 각종 자문,컨설팅업</li> <li>17. 신재생에너지 관련 과제연구 및 용역업</li> <li>18. 신재생에너지 관련 해외 투자사업</li> <li>19. 극저온 장비업, 설치업, 연구개발업</li> <li>20.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li> <li>21. 신재생 에너지 사업</li> <li>22. 태양광 발전사업</li> <li>23.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업</li> <li>24.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판매업</li> <li>25. 금융투자업</li> <li>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집합 투자업</li> <li>27.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li> <li>28.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투자 매매업 및 투자중개업</li> <li>29. 경영,경제,자본시장에 관한 조사연구</li> <li>30. 산업 및 기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수탁</li> <li>31. 신기술 투자금융업</li> <li>32. 전기자동차 및 관련부품의 제조판매업</li> <li>33. 전기자동차 및 관련부품의 연구 및 개발업</li> <li>34. 전기자동차부품도매업 및 용품의 제조판매업</li> <li>35. 전기자동차충전기 및 설비(교류/직류설비, 충전헤드, 전원모듈, 전기제어 시스템, 전기전환설비) 제조판매업</li> <li>36. 전기자동차용충전기임대업</li> <li>37. 전기자동차판매 및 임대업</li> <li>38. 특수목적용차량 및 관련부품의 제조 판매업</li> <li>39. 각종 차량의 정비 및 검사대행업</li> <li>40. 각종차량의 수리업</li> <li>41. 자동차관리사업(중고자동차매매업, 폐차업, 재생사업등) 및 관련가맹사업</li> <li>42. 차량정보사업 등 각종 부가통신과 별정통신 사업 및 관련기기판매, 임대업</li> <li>43. 수출입업</li> <li>44.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관련사업과 통신판매업</li> <li>45. 도매 및 상품중개업</li> <li>46. 건축자재 ·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li> <li>47. 기타전문도매업</li> <li>48. 유리 및 창호공사업</li> <li>49. 상품종합도매업</li> <li>50. 전문서비스업</li> <li>51. 경영컨설팅업</li> <li>52. 부동산업</li> <li>53. 구매대행업</li> <li>54. 각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li> </ol>	<p>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li> <li>2.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li> <li>3. 전자,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li> <li>4. 무역업</li> <li>5. 인터넷 서비스</li> <li>6. 섬유제품 제조 및 판매업</li> <li>7.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li> <li>8. 바이오산업 관련 기술 및 제품의 개발생산</li> <li>9. 나노 복합 소재 개발 생산</li> <li>10. IT부품 개발 생산</li> <li>11.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제조 및 판매업</li> <li>12. 신재생에너지 연구 개발사업</li> <li>13. 신재생에너지 관련 발전사업</li> <li>14. 신재생에너지용 자동차 부품 및 용품제조</li> <li>15. 신재생에너지용 자동차 부품 수입판매업</li> <li>16. 신재생에너지 관련 각종 자문,컨설팅업</li> <li>17. 신재생에너지 관련 과제연구 및 용역업</li> <li>18. 신재생에너지 관련 해외 투자사업</li> <li>19. 극저온 장비업, 설치업, 연구개발업</li> <li>20.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li> <li>21. 신재생 에너지 사업</li> <li>22. 태양광 발전사업</li> <li>23.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업</li> <li>24.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판매업</li> <li>25. 금융투자업</li> <li>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집합 투자업</li> <li>27.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li> <li>28.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투자 매매업 및 투자중개업</li> <li>29. 경영,경제,자본시장에 관한 조사연구</li> <li>30. 산업 및 기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수탁</li> <li>31. 신기술 투자금융업</li> <li>32. 전기자동차 및 관련부품의 제조판매업</li> <li>33. 전기자동차 및 관련부품의 연구 및 개발업</li> <li>34. 전기자동차부품도매업 및 용품의 제조판매업</li> <li>35. 전기자동차충전기 및 설비(교류/직류설비, 충전헤드, 전원모듈, 전기제어 시스템, 전기전환설비) 제조판매업</li> <li>36. 전기자동차용충전기임대업</li> <li>37. 전기자동차판매 및 임대업</li> <li>38. 특수목적용차량 및 관련부품의 제조 판매업</li> <li>39. 각종 차량의 정비 및 검사대행업</li> <li>40. 각종차량의 수리업</li> <li>41. 자동차관리사업(중고자동차매매업, 폐차업, 재생사업등) 및 관련가맹사업</li> <li>42. 차량정보사업 등 각종 부가통신과 별정통신 사업 및 관련기기판매, 임대업</li> <li>43. 수출입업</li> <li>44.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관련사업과 통신판매업</li> <li>45. 도매 및 상품중개업</li> <li>46. 건축자재 ·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li> <li>47. 기타전문도매업</li> <li>48. 유리 및 창호공사업</li> <li>49. 상품종합도매업</li> <li>50. 전문서비스업</li> <li>51. 경영컨설팅업</li> <li>52. 부동산업</li> <li>53. 구매대행업</li> <li>54. 주거용 건물 건설업</li> </ol>

<p>제4조(광고방법)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mhwajin.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한다.</p> <p>제21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 공고 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1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 사외 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p> <p>제34조(이사의 직무)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3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제2항의 .....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 소집권자로 한다.</p> <p>제42조(업무집행) ④ 대표이사는 당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한다.</p> <p>제52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p>	<p>55.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56. 토목 시설물 건설업  57. 지반조성 건설업  58. 각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p> <p>제4조(광고방법)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mhwajin.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아주경제신문에 한다.</p> <p>제21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좌 동  ② 삭제</p> <p>③ 좌 동  ④ 좌 동</p> <p>제31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p> <p>제34조(이사의 직무)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3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좌 동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좌 동  ④ 좌 동  ⑤ 좌 동</p> <p>제42조(업무집행) ④ 대표이사는 당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한다.</p> <p>제52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법정적립금  2. 임의적립금  3. 미처분이익잉여금</p> <p>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p>
---	---

임원 인사관리규정 신규대조표

구분	현 행	변 경
제 22조 (퇴직금의 산정)	임원의 퇴직금은 재임연수 1년에 대하여 퇴직 당월부터 그 이전 1년간의 총 보수액의 10분의 1을 지급한다.	임원의 퇴직금은 재임연수 1년에 대하여 퇴직 당월부터 그 이전 1년간의 총 보수액의 10분의 1을 지급한다. 단 대표이사의 경우 지급계수를 2로 한다.

